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태수 의원 외 13명
- 나. 의안번호: 제1070호
- 다. 발의일자: 2019. 10. 16.
- 라. 회부일자: 2019. 10. 22.

### 2. 제 안 사 유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 동안 배출원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특히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 시장은 현행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사항들과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려는 것임.

### 3. 주 요 내 용

- 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의 기간,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중 상시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간,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작년 3월 사상 유래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하여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나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내용 및 절차 등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중 상시 차량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간,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나. 검토의견

#### 1)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동향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임.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을 12월부터 3월까지로 설정하여 수송, 난방, 사업장 및 노출저감 등의 분야에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및 도로 청소강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9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9대 과제>

분야	핵심과제	시행시기
수송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20. 2.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19. 12. ~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20. 1. ~
난방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19. 12. ~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19. 12.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19. 12.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확대	저공해화('20. 1.~), 사용제한('20. 12.~)
노출	도로청소 강화	'19. 12. ~
저감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19. 12. ~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상위법 개정 및 수도권 3개 시·도 합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 「미특별」 ”)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20년 2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평일만 시행하고, 한시적 유예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전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운행제한의 세부 내용에 합의<sup>1)</sup>한 바 있음. 또한 「미특별」 일부개정법률안<sup>2)3)</sup>이 '20년 3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1) 미세먼지 시즌제 운행제한 협의 진행상황

- 국무조정실 주관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11.12)
- 국무조정실, 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과장급 회의(10.15, 10.29, 11.15)
- ※ 계절관리제 시행 발표 : 서울시(11.21), 환경부 등 15개 부처 합동(11.26), 경기도(11.27)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2077호)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2422호)

<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관련 합의사항>

운행제한 합의사항	개정안	수정안
'20.2월부터 운행제한 개시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일 규정('20.2.1.)
한시적 유예대상 설정	유예대상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 시기('20.12.1.)	
생계형 차량: 영업용, 화물차	영업용, 적재량 2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	'적재량 2톤 미만' 삭제 특수차 관련 조항 삭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제도 시행 후 조치 신청시 신청시점부터 단속 유예	조례 공포 전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조례 공포 전' 삭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장착불가 포함) - '20.12월말까지 유예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시기 별도 규정('21.1.1)

3)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 현행 조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행정기관 주차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행정기관 건물 중 민간 부문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 건물의 경우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도록 안 제5조제1항제4호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5조의2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 공포·시행시기<sup>4)</sup>를 고려한다면 금번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집행부 이송 이후 20일 이내 공포

- 안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는 「미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수도권 3개 시·도 합의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임.

일례로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209,639대)의 22.5%(47,100대)를 차지하는 영업용과 화물차의 운행제한 유예조치는 화물차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경유차보다 훨씬 크다<sup>5)</sup>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또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유예 대상과 기간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5) 경유화물차 평균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455g/km으로 경유승합차 평균(0.176g/km)보다 약 3배 높음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PM-2.5 배출저감 효과(2019, 서울시))